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임선출 안전심사 원칙 및 소위자동회부 도입〉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57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김현정 · 김문수 · 김동아 · 박지원
이성윤 · 김성환 · 안도걸 · 장경태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5. 9.

3. 회 부 일 : 2025. 5. 12.

※ 의안번호 : 1045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위원회 회부 순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 심사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의안 및 청원에 대한 자동 상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의안 또는 청원의 자동 상정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다음 날(청원의 경우는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에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항 및 제59조의2제2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사되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경우</u> <u>2.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u> <u>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심사가 필요한 경우</u>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① -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9조의2).

이러한 자동 상정 제도는 위원회에서 의안의 최초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¹⁾.

[참고]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의안의 숙려기간²⁾

- ▶ 일부개정법률안: 15일
- ▶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 ▶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 ▶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이처럼 현행법은 의안 및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때에는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에서의 안전 심사 순서와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정하도록 할 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³⁾.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전을 정하도록 하고, 다만, ①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사되는 안전과 직접 관련된 안전인 경우나 ②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또는 ③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심사가 필요한 경우 중의 어느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 295, 2024.7.

2)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실질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안별로 일정한 기간(이른바 “숙려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국회법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제49조제1항은)”,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7조제8항)”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심의대상 안전의 순서 등)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9조의2제4항 신설),

현행법이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자동 상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5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의안 또는 청원이 자동 상정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소위원회 자동 회부 제도”를 도입(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안 상정, 소위원회 회부 및 심사 등 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명시하고, 의안 및 청원의 소위원회 자동 회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예측가능성,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① 시의성 있는 안건의 우선 심사나 사회현안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② 의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실질적인 심사에 필요한 준비나 사전 조율이 미비한 상태에서 안건이 자동 회부되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